

2026년 제4회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4회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무대음향시설 운영 및 관리 - 기관 공연 및 행사 시 무대음향 기술 지원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인구정책과	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 진학·진로 상시 상담 - 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실무 - 행사 대관 및 행사 실무 -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 1.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응시연령	18세 이상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령(제8조), 지역·성별(제9조제4항)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무대음향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2급이상 자격중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 <u>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u>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 시설에서의 무대음향 실무경력

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다음 임용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 <u>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u>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청소년 진학관련 직무 경험 등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업무 경력
--	--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무보조·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주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명시
- ※ 시간제 근무경력(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및 복무조건

가.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연봉액 책정기준	비 고
무대음향 (일반임기제 7급)	70,782천 원	50,272천 원	50,272천 원 (하한액 × 100%)	
진학상담센터운영지원 (지방시간선택제 다급)	70,782천 원	50,272천 원	43,988천 원 (하한액 × 35/40시간)	

- ※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나. 복무조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토·일·공휴일, 야간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6년도 제4회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6. 9. 21.(월) ~ 9. 23.(수) (3일간)	2026. 10. 2.(금) (예정)	추후 별도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채용공고」란에 공고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합격자 발표 :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채용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1. ~ 9. 23. (3일간)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 054-420-6079)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소인이 찍힌것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구 분	5급 상당 이상	6·7급 상당	8·9급 상당
응 시 수수료	10,000원 *연구관지도관 포함	7,000원 *연구사지도사 포함	5,000원
납 부 방 법	직접 제출 시 김천시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김천시 수입증지 구입 우편 제출 시 우편통상환 구입·동봉하는 것으로 대체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불가능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경력 기재 금지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⑩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⑪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부서에서 확인 받아 추가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 비영리단체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시간제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 보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⑬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⑭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드리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타. 면접시험 응시자가 본인의 면접 평정 결과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평정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의 개수는 비공개)
- 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김천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문의	담당 직무 관련 문의
총무새마을과(인사팀) 054)420-6079	무대음향 [문화예술회관 운영팀] 054)420-7806
	진학상담센터 운영지원 [인구정책과 교육협력팀] 054)420-6545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비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학력·경력만 기재)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 논문표지 사본 첨부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필수기재) ※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0.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2. 개별사항(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등) ※ 해당자에 한함, 개별사항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4회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김천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김천시수입증지란에는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수입증지를 게첨

※ 김천시청 1층 민원실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게첨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⑦ 경 력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 금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 . . . 작 성 자 : (인)					

※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예정분야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결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요약서 A4 1매 별도 첨부)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김천시가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김천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0 년 월 일 성명 : 동의함 ☐ 동의안함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0 년 월 일 성명 : 동의함 ☐ 동의안함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김천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초본 미제출시 아래 주민등록번호 작성할 것)

(☐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 상 훈

종류	등록번호	수상년월일	훈격

◎ 연구실적

제 목	논문기여도	게재지명	발행(발표) 연월일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 자격증, 경력, 학력이 응시자격요건인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주 ○○시간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의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전화 : -)

20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